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36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셋별 의원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은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보의 접근 및 사회활동에 한계가 있는 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불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관내 국·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9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